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19가단1147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

전 문

원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장동진

피고D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오, 김호윤

변론 종결2020. 8. 19.

판결 선고2020. 10. 7.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D종친회(공동선조 E 13대손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2006. 7. 27. 접수 제293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G, H, I, J, K, L이 공유등기를 마치고 있었는데, 2006. 7. 27. 피고에게 위 사람들의 공유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06. 6. 1.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들은 2015. 3. 10. D종친회의 대표자라는 M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1,394,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E 13대손 F를 중시조로 하는 D종친회(이하 'F 종중'이라 한다)와 E 13대손 N를 중시조로 하는 O종친회가 통합한 종중유사단체이다.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의 소유가 아닌 F 종중의 소유로서 피고가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인데, 원고들은 F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으므로, F 종중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가. 피고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종중유사단체이므로 그 구성원들과 명의신탁을 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은 무효가 되고, 이와 같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상 명의신탁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명의신탁해지는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부존재한다.

나. 이 사건 임야는 F 종중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려면 F 종중의 종중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F 종중의 종중총회 결의가 없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원고로서의 자격이 없게 되는 것이어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885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F 종중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고들이 F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F 종중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원고들이 2015. 3. 10. D종친회의 대표자라는 M과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상대방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당사자로 표시된 "D종친회"로 볼 수밖에 없는데, 1) 갑 제1, 3호증, 을 제5, 6,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D종친회"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F 종중이 아니라 피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F 종중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권리로 주장하고 있는 F 종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등기명의인은 피고였다. 만일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F 종중과 체결하였다면, 원고들은 그 등기명의인도 아닌 단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5. 4. 14.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었는데,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0782(본소), 2017가합50799(반소),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2571(본소), 2017나2062588(반소), 상고심은 대법원 2018다281043(반소),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선행소송에서 F 종중이 아닌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반소로써 이 사건 매매대금을 반환해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기도 했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F 종중과 피고와의 관계 등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관계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원고들의 2020. 5. 28.자 준비서면 참조).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원고들이 F 종중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던 것이 되므로, F 종중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애당초 불가능하다.

4)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종친회"의 대표자로 표시된 M은 '피고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9. 1. 11.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232, 2017고단2346(병합)].

5)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D종친회"는 피고의 명칭과 동일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피고가 사용하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2009년경 F 종중과 N를 중시조로 하는 O종친회가 통합되어 만들어진 단체여서 F 종중이 이전에 사용하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함께 사용하였으므로 위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반드시 피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선행소송에서 피고는 E 11대손인 P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 중 Q 자손을 제외한 후손들로 이루어진 단체라고 인정되었고(P의 자녀는 R, S, T가 있었고, F와 N는 T의 아들이다. 피고를 P을 공동선조로 하는 단체로 보게 되면, P의 다른 자손인 R, S의 후손들도 피고의 구성원이 되는 결과가 되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F 종중과 O종친회의 통합단체보다 그 구성원이 훨씬 많아 지게 된다), 원고들 주장의 통합결의 이전인 2004년경 작성된 피고의 정관(을 제13호증)이나 원고들이 제출하는 2012년경 작성된 피고의 정관(갑 제15호증)에도 피고가 P의 후손(Q의 자손은 제외)들로 구성된 단체라는 점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어서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를 F 종중과 O종친회가 통합되어 만들어진 단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태경

별지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다.